경제혁신 3개년 계획 / 대한민국 제도약의 힘, 창조경제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2016년 2월 4일(목)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기업정책팀 조익노 팀장(044-203-4830), 고승진 사무관(4831), 문경준 사무관(4833)

「기업활력법」 제정으로 사업재편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

-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제정안 2.4일 국회 통과 -

◈ 「기업활력법」(**3년 한시법**) 제정으로 기업들의 **자발적 사업재편이 신속·간편**해 질 전망임

○ 「상법」상 **합병·분할 절차가 간소화**되고, 지주회사 일부 규제의 유예기간이 **최장 3년까지 연장**됨

○ 동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금년 **8월부터 시행**될 예정임

◈ **산업통상자원부**는 동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잉공급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

1. 법 주요내용

< 신청자격 및 절차 >

□ 동법은 ① **과잉공급 분야 기업**이 ② **생산성 향상**과 ③ **재무구조 개선**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며,

○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인지 여부, 사업재편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**세부기준 등은 동법 시행령 및 지침에 마련**할 계획임

□ **기업**이 각종 특례를 지원 받기위해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포함한 **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*에 제출**하면,

* 예 : (산업부) 제조업·유통업, (국토부) 해운업·건설업, (금융위) 금융업 등

○ **주무부처**가 해당 사업재편계획의 생산성 향상, 투자·고용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 후 **심의위원회* 심의**를 거쳐 **최종 승인**함

* 위원장 2인(산업부 차관, 민간위원)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정부위원은 관계부처 1급 상당 공무원, 민간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촉

< 사업재편계획 신청·승인 절차 >

기 업	⇨	주무부처 검토	⇨	위원회 심의	⇨	주무부처
주무부처에 사전상담 및 승인 신청		사업재편계획 검토 및 관련부처 협의 후 위원회 상정		부처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심의		승인여부 및 지원 내용 통보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2-04 18:13:02

< 주요 지원 특례 >

1 (**상법 특례**) 승인기업이 보다 신속·간편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병·분할 등 조직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,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둠

○ (**소규모분할 제도 도입**) 승인기업은 사업재편기간 중 1회에 한해 총자산 10% 이하의 소규모 사업부문을 분할시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,

- 기업이 비핵심 사업부문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하여 핵심부문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가능해짐

○ (**소규모합병 요건 완화**) 피합병기업의 시총이 합병기업 시총의 20% 이하인 경우, 합병기업의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함

- 현행 「상법」은 시총의 10% 이하인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규모 합병을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합병 대상 선정에 제약받는 애로가 있었음

- 다만,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합병 반대요건을 20%에서 10%로 완화하여 현행 「상법」보다 견제장치를 강화하였음

○ (**간이합병 요건 완화**) 현재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% 이상 보유시 피합병회사의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 가능하나, 이를 80%로 완화함

○ (**관련 절차기간 단축**) 승인기업에 대해 △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고, △ 주총 소집통지 기간을 2주에서 7일로 단축하였으며, △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였음

- 아울러, 승인기업의 반대주주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1개월(비상장 2개월)에서 3개월(비상장 6개월)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시 승인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였음

2 (「**공정거래법**」 **특례**) 한편,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은 경우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이 연장됨

○ (**지주회사 규제특례**)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%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재 1~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,

-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,

-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%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주회사 내 계열사의 지분 보유 부담을 경감함

○ (**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특례**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상출제집단) 소속 기업이 사업재편 추진시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함

- 상출제집단 소속 승인기업의 상호·순환출자가 가능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, 승인기업 간 채무보증이 가능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 부담을 경감함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2-04 18:13:02

- 다만, 상출제집단 소속 승인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200%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계열사간 부실확산 방지 차원에서 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유예를 배제함

3 (**세제지원**) 기업의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과세애로 해소를 위해 동법과 연계한 세제지원 방안을 세법에 旣마련 (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규정)

4 (**자금지원 등**) 동법은 중소·중견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대형화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등 자금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,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임

5 (**고용안정**) 아울러, 기업의 사업재편에 따른 근로자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기업에게는 실업예방 의무 부과하였고,

○ 사업재편계획 승인시 근로자 지위의 부당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한편, 고용부와 협업하여 근로자 재취업 및 전직지원을 강화하기로 함

6 (**대기업 악용방지**) 동법은 대기업 악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5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음

○ 적용범위를 과잉공급 업종에 한정하고 국회 추천 위원이 포함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혜시비를 최소화하였으며,

○ 경영권 승계 목적의 사업재편은 사전에 승인을 반드시 거부하고, 사후에도 승인 취소 및 과징금을 중과토록 규정을 강화하였음

2. 의의 및 향후계획

□ 금번 「기업활력법」 제정은 정부가 민간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한 데에 의의가 있음

○ 정상기업은 「기업활력법」을,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은 「기업구조조정촉진법*」 및 「통합도산법」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법제가 완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

*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'15년 말 일몰되었으며, 현재 국회에서 연장논의 중

□ 「기업활력법」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(8월 중)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

○ 산업부는 과잉공급 여부 판단기준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준,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방안 등 세부사항을 담게 될 시행령 및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

【참고】: 「기업활력법」 지원 특례 요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조익노 팀장(☎ 044-203-483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6-02-04 18:13:02

참 고 「기업활력법」 지원 특례 요약

분야	지원 내용	구체적 내용
상법	▪ 간이조직재편절차 간소화	▪ 소규모분할 제도 도입 ▪ 소규모합병·간이합병 요건 완화
	▪ 조직재편 기간 단축	▪ 주총 소집기간 단축 ▪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단축 ▪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
공정거래법	▪ 기업결합심사 합리화	▪ 기업결합신고창구 단일화 ▪ 기업결합심사시 부처의견 고려 가능
	▪ 지주회사·상출제규제 유예기간 연장	▪ 관련 유예기간을 1~2년 → 3년으로 연장
세제자금	▪ 세제·자금지원 근거 마련	▪ 국세·지방세는 「조특법」·「지특 [illegible] 규정
사업혁신	▪ 중소·중견기업 사업혁신 지원 근거 마련	▪ 국내외 판로개척 및 정보 제공 ▪ 경영·기술·회계자문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
능력개발 및 고용안정	▪ 근로자 능력개발 및 실업예방 노력 의무	▪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예방 및 재직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 의무 부과
	▪ 근로자 능력개발활동 등 전직지원 근거 마련	▪ 근로자 직업능력개발, 재취업교육 등 전직지원
규제불확실성해소	▪ 법령·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	▪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주무부처에 법령·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 요청 가능
	▪ 기업제안방식에 의한 규제개선 요청	▪ 규제개선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제출시 주무부처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